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
번 호

11

제출년월일 : 1999. 4. 15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이 보육의 전문성과 영유아 건전 육성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에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자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
- 종사자들에 대한 연가일수를 공무원 복무 규정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 하고자 할 때와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, 야간 보육시설의 급식비, 간식비 등의 불가피한 경비를 수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 폐지(안 제5조)
- 나. 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개인 위탁 운영 수탁자의 상한 연령을 만65세 이하로 하던 것을 만62세 이하로 하향조정(안 제6조 제1항)
- 다. 현 다른구의 조례와 비교해 볼 때 조례 양식이 상이하여 일부 조항 조정 삭제(안 제6조 제2항)
- 라. 불필요한 규제조항인 수탁자의 의무조항 삭제(안 제8조)
- 마. 종사자의 연가일수를 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켜 종사자의 불만사항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(안 제13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제27조
- 나.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

제6조 제1항중 “만 65세이하”를 “만62세이하”로 하고 동조 제2항중 “별지와 같이”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. 다만,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

제1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

근 속 기 간	연 가 일 수
· 3월 이상 6월 미만	4일
· 6월 이상 1년 미만	7일
· 1년 이상 2년 미만	10일
· 2년 이상 3년 미만	13일
· 3년 이상 4년 미만	16일
· 4년 이상 5년 미만	19일
· 5년 이상 6년 미만	22일
· 6년 이상	23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보 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.</p> <p>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 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④수탁자는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 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 되는 예산을 부담할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서 의료보험법, 근로기준법 및 국민 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11조(종사자 임면) ①어린이집 원장 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. 다만, 위탁 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11조(종사자 임면) ①..... 다만,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인 때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휴가)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, 병 가.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 1.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	제13조(휴가)..... 1.
근 속 기 간	연가일수
· 3월이상 6월미만	<u>3 일</u>
· 6월이상 1년미만	<u>7 일</u>
· 1년이상 2년미만	<u>8 일</u>
· 2년이상 3년미만	<u>11 일</u>
· 3년이상 4년미만	<u>14 일</u>
· 4년이상 5년미만	<u>17 일</u>
· 5년이상	<u>20 일</u>
· (신설)	
근 속 기 간	연가일수
· 3월이상 6월미만	<u>4 일</u>
· 6월이상 1년미만	<u>7 일</u>
· 1년이상 2년미만	<u>10 일</u>
· 2년이상 3년미만	<u>13 일</u>
· 3년이상 4년미만	<u>16 일</u>
· 4년이상 5년미만	<u>19 일</u>
· 5년이상 6년미만	<u>22 일</u>
· 6년이상	<u>23 일</u>
2.~4. (생략)	2.~4. (현행과 같음)